

정 책 과 제 도

2004.9.1~2005.8.31 최저임금(안)*

-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04년 6월 25일에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2,840원, 8시간 기준 일급 22,720원으로 심의·의결함.
 - 이는 전년도에 비해 13.1%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8.8%에 해당하는 125만 명이 혜택(영향률)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(35.1%)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(2.6%)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나, 저임금근로자 보호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임금격차 해소에 역점을 두어 13.1% 인상률의 최저임금을 심의·의결하였음.
 - 한편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액은 노동계의 최종 수정안이 채택된 것임.
- 노·사의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
 - 사용자측 : 1차(2.6%)→ 2차(3.0%)→ 3차(3.8%)→ 4차(7.0%)→ 5차(8.0%)
→ 최종(10.2%)
 - 근로자측 : 1차(35.1%)→ 2차(17.5%)→ 3차(13.1%)
- 이와 같이 의결된 최저임금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2004년 8월 5일까지 결정·고시하게 되며, 이후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됨.
-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전원회의 6회, 임금수준전문위원회 2회, 생계비전문위원회 2회 및 연구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쳐 본 최저임금(안)을 의결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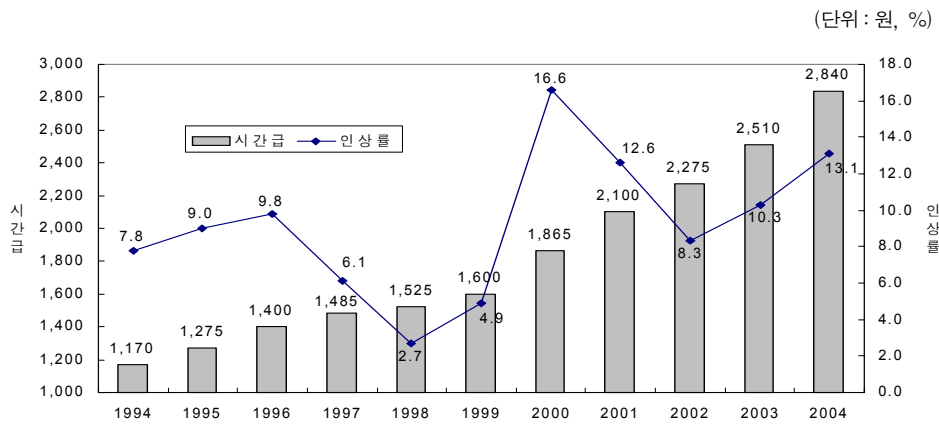
* 보도자료 『2004.9.1~2005.8.31 최저임금(안) 의결』, 노동부, 2004. 6. 25 참조.

<표 1>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주요내용

	2003. 9. 1~2004. 8. 31	2004. 9. 1~2005. 8. 31
시간급	2,510원	2,840원
일 급	20,080원	22,720원
인상률	10.3%	13.1%
영향률	7.6%	8.8%
수혜 근로자수	1,035천명	1,245천명

주: 영향률과 수혜근로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」를 이용하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정한 수치임.

[그림 1] 최저임금 및 인상률 추이



주: 각년도 9월 ~ 익년도 8월 기준 자료임.